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36

발의연월일 : 2021. 1. 21.

발 의 자:이용우·홍정민·박완주

진성준 • 민형배 • 윤준병

유동수・윤재갑・송영길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(투자자 보호, 건전한 거래질 서 유지)과 행사수단(필요한 조치)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 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조치명령 남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구체화(긴급성·명확성 추가) 하고 대상에 임원(업무집행지시자 포함)까지 포함시키고 제416조 각 호의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 라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16조 및 제446조)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투자업자에게"를 "긴급한 조치가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1.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 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(受信)의 제한
- 2. 영업의 양도나 예금·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
- 3. 채무변제행위의 금지
- 4.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·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
- 5.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
- 6.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
- 7.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

- 8.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·조직의 축소
- 9.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
- 10.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
- 11.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
- 12.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
- 13.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
- 1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, 해임, 등기등에 관하여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3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, 절차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6조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2의2. 제4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)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16조(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제416조(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권)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 권) ① -----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-----긴급한 조치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다. 다만, 제7호의 장내파생상 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----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1. ~ 8. (생략) 1. ~ 8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 1.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 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 은 금리에 의한 수신(受信)의 제한

- 2. 영업의 양도나 예금·대출 등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
- 3. 채무변제행위의 금지
- 4.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·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
- 5.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
- 6.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
- 7.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 일
- 8.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· 조직의 축소
- 9.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 당 금융기관의 인수
- 10.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

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

 공시
- 11.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

 지
- <u>12.</u>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 <u>한</u>

<신 설>

<신 설>

제44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6조(벌칙) -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62. (생략) <신 설>

63. (생략)

- 13.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 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, 해임, 등기 등에 관하여는 「금융산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3을 준용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세부기준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1. ~ 62. (현행과 같음) 62의2. 제416조제1항에 따른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. (현행과 같음)